

18~19세기 흥주(酗酒) 율령과 그 실태*

차인배**

〈차 례〉

1. 머리말
2. 흥주의 폐단과 율령 제정
3. 흥주범죄의 증가와 율령 강화
4. 도성 내 흥주 실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18~19세기 음주의 폐단 중 하나인 술주정(使酒·酗酒)을 중심으로 酒禁政策의 변화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조선후기 도성에서 발생한 酗酒 사례를 통계화하여 음주자의 신분, 직업, 술주정 형태, 범죄, 처벌 등을 분석하여 그 실태를 분석했다. 조선전기 주금정책은 주로 재해에 대응한 救恤을 위한 소극적 단속에 그쳤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음주문화가 확산하면서 술이 개인의 일탈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주금정책이 술을 제조하는 釀酒을 금지하던 방향에서 술을 마시는 飲酒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나아가 술을 마시고 주정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흥주자를 처벌하는 적극적 통제로 전환되었다.

1729년(영조 5) 영조와 신료들이 주금정책의 일환으로 多釀者和 士大夫 음주에 관한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흥주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이후 1755년(영조 31) 전례 없는 강력한 주금령이 공포되면서 흥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흥주자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이로 인한 범죄와 소송이 증가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 따라서 영조와 대신들은 술을 광기와 범죄의 원인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통제책을 마련했다. 1762년(영조 38) 영조는 거리에서 술주정하는 자를 重棍으로 다스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1767년(영조 43) 영조는 주금에 관한 형률을 개정하면서 재범자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결국 영조대 점차 강화되었던 흥주자 단속은 1789년(정조 9) 반포된 『대전통편』에 술주정한 자는 杖100이라는 처벌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536).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한편 인조~고종 연간 도성 내 발생한 흥주 사건 1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흥주범의 73.6%가 영조~순조년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흥주범에 대한 법률 규정이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한 점으로 범죄의 발생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라는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사료상 드러난 흥주 주범은 일반인 보다 주로 국왕과 궁궐의 권위를 뒷배로 하는 掖隸와 承政院, 刑曹, 軍營 등 권력기구에 소속된 下隸 등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주로 야간에 술을 마시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권위에 의지해 그들을 저지하는 단속 관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각종 음주 범죄를 자행했으며, 처벌 후에도 술주정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제어] 흥주(酗酒), 사주(使酒), 주금령(酒禁令), 주금형률(酒禁刑律), 음주(飲酒), 별감(別監)

1. 머리말

조선왕조는 기근·한재로 겪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휼의 목적으로 주금령을 발령했고, 평시에도 수시로 금령을 반포하여 세간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빈번한 주금령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사대부가의 의례나 제례에 술이 빠질 수 없는 격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주를 실현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더욱이 주금령이 발동되면 금리의 작폐로 민간에 동요를 일으키는 폐단으로 금령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선전기 주금책은 적당한 用酒는 허용하면서 戒酒文을 내려 관료들의 會飲과 宴飲 등을 교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대소신료 사이 崇飲 문화가 확산했고, 도성 곳곳에 酒燈이 매달릴 정도로 일반 대중의 음주 문화가 보편적이었다. 조선 정부는 술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왕의 구휼 중심의 소극적 주금정책을 釀酒와 飲酒를 직접 단속·통제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조선 정부는 주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조, 매주자, 음주자, 흥주자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갔다.

기존의 주금(酒禁)에 관한 연구는 한성부의 삼금정책에 관한 연구¹⁾를 시

1) 김대길, 『조선 후기 주금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50, 한국사학회, 1995; 김대길, 『조선 후기 우금 주금 송금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작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후속적 심화 연구로 연계되지 못했다. 이후 법제도적 관점에서 금주령의 법제화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²⁾가 있었지만, 법률 제정문제에 국한되어 주금정책의 전반적 변화상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육조거리를 기획적으로 조명하는 연구에서 도성의 뒷골목 음주문화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하례들의 음주실태를 다룬 연구³⁾도 있었으며, 법사학적 관점에서 18~19세기 주금형률의 제정과정과 정책 추이를 고찰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⁴⁾ 기왕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주금정책에 관한 연구는 술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소비 등 통제 범위와 대상을 세분화하여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율령 재검 및 개정 과정을 계기적으로 고찰하는 법제사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18~19세기 주금정책이 釀酒에 대한 통제에서 飲酒에 대한 통제로 확대된 양상에 주목하고, 특히 음주문화의 대중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와 범죄의 원인으로 인식된 酗酒⁵⁾문제를

- 2)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의 시행양상』,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과 시행양상』, 『전북사학』 42, 전북사학회, 2013; 배진아, 『조선 후기 음주문화와 금주령』,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 이근호 외, 『한양의 중심 육조거리』, 서울역사박물관, 2020.
- 4) 차인배, 『18~19세기 주금정책(酒禁政策) 추이와 주금형률(酒禁刑律) 제정』, 『법사학연구』 65, 한국법사학회, 2022.
- 5) 조선초부터 흥주는 음주 후 술버릇으로 이해했다. 선조와 유희춘이 경연장에서 ‘흥주’에 대한 개념을 논하는 과정을 보면 당시의 흥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조 7년(1574) 경연에서 유희춘이 주(紂)와 주의 삼인(三仁), 독서법, 토호의 폐단, 술버릇 등을 논하고 있었다. 노수신은 진강의 내용 가운데 술버릇에 관한 내용에 대해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으로는 몸을 상하게 되고 밖으로는 威儀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희춘도 “술은 시간을 놓치고 일을 그르치게 하니 대단히 유해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조가 유희춘에게 그 구절에 사용한 “**酗**자는 곧 이른바 주정을 뜻하나”고 되물었다. 유희춘은 “**酗**자는 **酒**자에 **凶**자를 붙여 만든 글자로 **소위 사주(使酒, 술주정)로 화를 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항악의 ‘犯義之過’ 중 酗博鬪訟에서 흥이 최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선조실록』 8권, 선조 7년(1574) 5월 30일(계묘); 『한국문집총간』, 『眉庵先生集』 17권, 경연일기). 한편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나는 이 술이라는 음식이 사람에게 유익한 단 한 가지도 모르겠다”고 그 폐해를 지적하였다(『星湖僿說』 제6권, 萬物門 酒). 나아가 그는 酗을 “술에 상한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술을 酗酒라고 하는 것은 兵器를 凶器라고 하는 것과 그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醉字從卒. 醒字從生. 蓋以醉則死. 醒則生矣. **酗字從凶. 謂以酒而凶也**”라고 해석하고 있다(『芝峯類說』 卷7, 文字部 字義). 또한 남명학은 『五龍齋遺稿』에서는 “酒之禍大矣. 觀於字義. 可爲凜然. 醉字從卒. **酗字從凶. 醺字從火. 惟醒字從生. 醉之類三. 醒之類一. 以一制三. 豈不難哉. 信乎齊聖溫克者少. 而彼昏不知者多**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 초 술이 보편화하기 이전 술주정은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술주정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술주정은 개인 간의 다툼은 물론 집단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흥주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후기 주금정책의 변화 양상을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후반 흥주가 범죄로 규정되어 법률로 금지되었지만, 오히려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17~19세기 서울을 중심으로 흥주범죄의 발생 추이와 범죄자의 직업과 신분, 흥주 범죄의 유형, 공간, 단속 기관 및 처벌 등을 분석하여 음주와 흥주 범죄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흥주의 폐단과 율령 제정

1) 흥주의 폐단

통상 음주는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잊게 하고 대인 간 유대를 돈독히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술양을 조절하지 못해 취하게 되면 평소와 달리 희노애락 등 감정 기복이 커지고 심지어 이성을 잃고 폭력을 불러오기도 했다. 선초부터 술주정은 使酒 혹은 흥주라고 지칭했는데, 각종 비행과 범죄의 온상으로 관료들의 평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흥주가 조직 내 질서와 규율을 해치는 악행으로 치부되어 금조로 명시되어 처벌된 것은 군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군사의 규율이 엄격한 軍陣에서 흥주는 상명하복 체계와 군 기강 진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금령으로 통제되었다. 세종대 편찬

也”(『五龍齋遺稿』文 漫錄). 원래 주요 한자사전에서는 醜자를 ‘후’로 독음하지만,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흥’으로 독음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사주(使酒)와 흥주(醜酒)라는 용어는 술주정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사주와 흥주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된 『陣書』 군령조에는 “술주정으로 떠들썩하게 심한 욕을 하고 도리에 따르지 않는 무례한 자”를 흥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진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조직의 결속과 연대를 침해한 술주정은 용납될 수 없기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참형으로 처벌했다.⁶⁾ 다만 공식 연회때 군역에 대한 위무 차원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경우는 연좌하지 않는 등 탄력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⁷⁾

반면 조선전기 문반 관료들 사이에서도 흥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관료의 도덕적 품성 문제로 치부해 특별한 처벌 없이 사면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 때문에 늑두룩 술주정을 고치지 못하고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⁸⁾ 특히 지방관이 술에 빠져 공사를 아전에게 미루고 민생을 돌보지 못해 탄핵당하기도 했지만, 국왕은 관료의 체모를 크게 손상하지 않은 한 가벼운 처벌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⁹⁾

한편 조선후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名流의 음주를 높은 정취로 추앙하는 이른바 승음문화가 확산했는데, 특히 관료들의 흥주로 인한 폐단은 날로 늘어났고 백성에 대한 학정도 가혹했다. 습관적 음주를 일삼던 관리들은 처리해야 할 중대한 업무를 廢事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죄수의 심리를 공정히 시행하지 않고 술김에 남형을 가해 치사시키기도 했다. 훈련대장 장봉익은 술주정으로 정신이 헛갈리어 깨어 있는 날이 적고 호령을 하지 않아 군대의 기율이 무너지는 등 직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¹⁰⁾ 차사원 윤심응은 흥주로 사적 감정을 품고 법 외의 酷杖을 사용해 죄수를 살해한 죄로 찬배형에 처해졌다.¹¹⁾ 일신현감 박필중은 성격이 貪虐하고 술주정이 심할 경우 무고한 백성에게 특별히 제작한 大棍으로 남장한 죄로 사

6) 『세종실록』 세종 15년 7월 4일, 酗酒喧嘩惡罵, 無禮於理不順者斬.

7) 위와 같음, 因公宴會, 醉不坐.

8) 『세종실록』 세종 22년 2월 2일.

9) 『중종실록』 중종 20년 10월 18일.

10) 『영조실록』 영조 2년 7월 7일.

11)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5월 12일, 掌令許集疏曰(중략) 心雄身爲差員, 酗酒顛妄, 因一鄙褻之私事, 濫施法外之酷杖, 終至於無故殞斃, 揆諸法比, 罪固不輕, 而畢竟徒配, 未免太欺, 聖上亦且循例判下, 烏在其重人命之意哉? 當該禁堂, 亦難免擬律差輕之失, 不可不推考警責, 而心雄則宜施竄配之罰, 以懲日後濫殺之弊焉.

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¹²⁾ 이처럼 조선후기 관료의 흥주 빈도가 늘어 갔고 폭력의 유형도 과격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로 대처했지만, 근본적인 폐단이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무관 및 下屬들의 흥주 범죄는 기찰관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무리를 지어 관청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금위영소속 순라군이 필동 근처에서 백의 차림으로 술에 취해 횡행하는 한량 이한중·민장연·조동익 등 세 사람을 체포하여 나졸에게 인계했는데, 이들은 도리어 나졸을 구타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밤 2경쯤 이들은 금위대장의 집에 몰려가 어지럽게 소리를 지르며 끝없이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금위영은 야금이 엄중한 시간에 대장 집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킨 죄는 일반적 범야의 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重律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¹³⁾ 그밖에도 국왕에게 보고된 영조의 수도안에 따르면 관청의 사령의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흥주하다 체포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⁴⁾

2) 광기와 범죄의 원상 흥주

영조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곡하거나 웃는 자가 있는데, 웃으면 좋겠지만 곡하는 자는 괴상하고 고의로 狂態를 부리는 것이라고 술주정을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술 마시는 것을 반드시 금할 필요는 없지만, 길거리에서 술주정하는 폐단은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¹⁵⁾ 영조와 흥봉한 간의 대화를 보면 술주정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그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12) 『영조실록』 영조 18년 10월 6일.

13)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3월 25일, 同三人李漢重·閔長年·趙東益等, 毆打邏卒, 仍爲逃躲, 二更量, 直到大將家, 亂喝胡叫, 罔有紀極, 以足蹴門, 舉措絕悖. 渠既犯夜, 又爲作傘於大將家, 當此夜禁申嚴之日, 少有紀綱, 此輩何敢若是乎? 如此悖惡之輩, 不可以循例犯夜之罪治之, 令攸司囚禁, 繩以重律, 何如? 傳曰, 令該曹, 各別痛治.

14)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10월 29일;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12월 17일.

15)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15일 上曰, 不必禁酒, 過飲之弊, 至於街路使酒, 此則不可不禁, 或有飲酒而哭者, 或有飲酒而笑者, 笑則可矣. 哭則可怪, 此不過故作狂態也. 豈不知其父母耶?

영조가 이르기를 “술을 마신 후 술주정하는 것은 술이 아니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술주정한 자는 으레 고성과 망언을 하며 미친 사람과 같습
니다”

영조가 이르기를 “술을 마신 후 穩睡한다면, 폐단이 없을 것이다”¹⁶⁾

즉 영조는 술주정하는 것은 단순히 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기질이나 이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홍봉한은 술주정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에 비유해 통제 불가능한 비이성적 상태로 여기고 있었다. 즉 영조는 술주정을 인간이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순순히 잠을 청하면 폐단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¹⁷⁾ 그러나 지나치게 술을 마신 사람은 밤새 술주정하며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조의 생각처럼 단순히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한편 형조판서 조현명은 형조에 올라온 소지 중 흥주로 서로 싸우고 쟁송하는 것이 열에 반이나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중단된 주금 법령을 재차 시행할 것을 제기했다.¹⁸⁾ 영조 역시 사주를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의 원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⁹⁾ 이처럼 흥주가 술을 마시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실수로 여기기도 했지만, 조선후기에는 각종 소송을 일으키고 鬪鬪·殺獄 사건을 도발하는 범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영조는 주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大·小酒家에 대한 주금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적 대안으로 사주자를 단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²⁰⁾

16)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7월 29일, 上曰, 飲酒後使酒者, 非酒矣. 洪鳳漢曰, 使酒者, 例多高聲妄言, 如狂如癡矣. 上曰, 酒後穩睡者無弊矣.

17) 알콜이 신체의 중추신경계에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켜 뇌 활동과 이성적 판단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18)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6월 20일, 顯命曰, 酒禁既有令典, 不可不行, 而戊申年間, 太爲嚴急, 至於棄酒川渠者, 厥後旋即停廢, 到今解弛特甚, 以本曹所呈所志觀之, 以其酗酒, 相關爭訟者, 十居其半, 爲弊滋甚. 故頃者已出禁令, 而姑寬其限, 使之處置, 既釀之酒, 後從當更爲出令, 而禁斷矣. 上曰, 所達好矣, 依爲之.

19)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2월 2일, 判付內, 近來殺人, 俱由使酒, 其在杜弊之道, 豈可參酌?

20)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25일 上曰, 酒禁事亦有弊端, 大酒家雖嚴禁, 而小酒家紛興云, 予意則

3) 흥주금지 규정의 대두

영조는 집권 초 가장 경계할 急務로 朋黨·奢侈·崇飲 등 이른바 ‘三條之戒’를 내려 국정외의 기초로 삼았다. 주금정책은 계주령을 내려 술의 절제를 권유하는 온건책과 주금령을 발령해 술을 전면 통제하는 강경책이 있었는데,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집권 초반 영조의 주금정책은 列聖의 戒酒論을 전통을 계승해 술의 폐해를 통감하고 스스로 절제하라는 계주령을 반포했다. 국왕이 주금령을 시행할 경우 금리가 무리한 단속을 펼쳐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흑심한 재해로 인한 곡식 절용이 절실할 경우를 제외하고 금령 발령을 자제했다. 특히 영조는 제향을 위한 제주를 금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술을 스스로 경계하도록 교화하는 계주령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²¹⁾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가에서는 봉제사 접빈객을 위한 多釀酒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몇몇 양반가는 가솔을 통해 술을 潛賣하여 이득을 얻기도 했다. 1729(영조 5년) 사대부의 매주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영조는 위반자를 각별히 논죄할 것을 재차 신칙했다.²²⁾ 이 과정에서 신료들은 사대부가의 양주와 매주를 통제하기 위한 전면적 주금령을 요청했지만, 영조는 폐단이 가장 심한 다양주와 양반 매주만 단속해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조는 술을 완전히 없애야 주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왕실의 의례와 사대부가의 봉제사·접빈객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술을 금하기에 어렵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형조 금리와 한성부 部隸가 사대부가 단속에 제약이 많아서 양반가의 매주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한편 1729년(영조 5) 영조가 석강에서 <酒誥篇題>를 강독하던 중 시독관에게 주금령의 존속 여부에 관한 방책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영조와 참찬

但擬治使酒者似好耳。

21) 차인배, 앞의 논문, 59쪽.

22) 『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29일, 上曰, 大凡新令, 要以行之久遠爲貴. 小民之釀酒興利者, 嚴加禁斷, 而士夫之釀酒買賣, 尤當一切嚴禁, 各別論罪, 以此更爲申飭, 可也.

관 김시환과 검도관 유엄 등 세 사람은 사대부의 금령 폐지 여부를 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영조는 자신이 혹독하지 못해 주금령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다소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유엄은 오부의 단속 관원이 민간과 사대부에 대한 단속이 균등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금령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홍주를 금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나아가 금리가 민간을 搜告하여 징속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김시환은 금령이 엄중하지 못해 장사에서 술을 사 마시고 취하지 않은 자가 없고, 술로 인한 살육 사건이 증가한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주금령 시행을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영조는 주금령을 혁파하기도 어렵고, 존속하기도 해로움이 많으며 정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엄은 주금을 영속적으로 시행했던 나라가 없었지만 홍주를 경계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주금령 대신 술주정을 단속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결국 영조는 사대부가 술을 파는 것은 강력히 금지하되, 추가로 홍주를 금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술로 인한 폐단을 줄이도록 지시했다.²³⁾

이처럼 홍주에 대한 금지는 영조 전반 주금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양주와 사대부 매주 등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주금 단속이 양조자에서 음주자로 확대되었다.

4) 홍주 규정 재정과 『대전회통』 명문화

영조가 주금령을 강력히 추구하지 못하고 주저한 이유는 제례에 술을 금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유교적 제례에서 술은 빠질 수 없는 신성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제례를 지내지 않은 한 술은 절대 없앨 수 없었다. 그러나 영조는 술을 대체할 음식으로 醴酒를 생각해 낸 뒤 강력한 술 금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즉 영조는 왕궁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례에는

23) 『승정원일기』 영조 5년 8월 20일, 上曰, 可使酒永無乎? 若不永無則奈何, 閭家奪入之法, 似可易行, 故嗣服後果則行之, 此則於我心, 終似難行, 前日釀者, 今不得釀, 士大夫未嘗釀者, 今乃賣酒, 徒爲利於前所未釀者耳. 勿去酒禁而以禁釀爲令則好矣.

기존에 사용했던 홍로주와 백로주 등을 모두 금하고 예주만 사용할 것을 지시한 후 이를 어긴 자는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이후에 술주정한 자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대신 제조한 사람을 무겁게 다스리도록 명령했다.²⁴⁾ 이 규정은 예주가 제주를 대체함에 따라 모든 술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술을 제조한 자만 엄격히 통제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후 영조는 대신과 어사에게 주금 상황과 노상의 사주자 여부를 수시로 물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범양자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지만, 사주자는 거의 사라져 거리에서 싸움하는 자는 물론 법사의 옥송과 살육 사건이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조는 거리의 사주자가 사라진 현상이 주금의 효과라고 만족감을 드러냈고, 더욱 엄격히 단속하여 술을 완전히 근절할 것을 재차 천명했다.²⁵⁾

그러나 영조의 기대와는 달리 주금령은 단기적 효과에 그쳤고 재차 양주자가 증가하여 단속된 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영조는 이러한 실정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정책 실패의 원인 찾기에 고심했다. 이때까지 영조의 주금 단속은 음주자보다 양주자 처벌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기존 정책이 지나치게 양주자 단속에만 치중한 점이 문제라고 직감했다. 즉 영조는 술 유통 구조가 생산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기보다 수요에 따라 생산이 결정되는 구조임을 깨닫고 음주자를 무겁게 처벌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1756년(영조 32) 마련된 주금형률은 변화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자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형률은 매음자를 사대부, 중인, 상민, 노비 등 신분에 따라 구분하고 엄형(장100) 후에 각각 遠配·充軍·殘邑奴婢·濟州定配 등의 도·유배형으로 처벌했다. 동시에 양조자 처벌에 관한 규정이

24)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9월 10일, 噫, 王公匹庶, 雖不能遽用玄酒, 吁嗟醴酒, 豈不勝於玄酒乎? 先將此意, 告于太廟, 意亦深矣. 告廟之後, 後之嗣王, 後之卿士, 豈敢不遵? 自歲初, 上自王公, 下至匹庶, 祭祀宴禮, 只用醴酒, 禁其紅露白露, 一切酒醕巧名者, 並爲嚴禁, 犯者重繩, 而此後若有使酒者, 勿治其人, 重治其釀酒者.

25)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4월 12일, 上曰, 近來酒禁, 何如? 鼎輔曰, 連爲申飭, 而猶有間現捉者, 實爲難處矣. 上曰, 嚴禁而折之, 然後可無矣. 路上無使酒者乎? 僉曰, 此則豈有之乎? 殿關絕無, 故法司獄訟多減矣. 善行曰, 京外殺獄, 自此必將無之矣. 上曰, 此則禁酒之效也. 僉曰, 然矣;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윤 9월 23일, 上曰, 無使酒者乎? 鳳漢曰, 無矣. 上曰, 外方亦嚴禁乎? 鳳漢曰, 然矣. 上曰, 有飲酒北走者乎? 鳳漢曰, 旣無酒, 何有北走乎?

제정되었는데, 술을 판매한 양조자가 술을 사서 마신 매주자를 直告하지 않으면 엄형 후에 노비로 영속하도록 규정했다.²⁶⁾ 즉 이 규정은 매음자의 신분을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했는데, 일반인 보다 양반의 형벌을 무겁게 하여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했다. 또한 체포된 양조자가 매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낮추는 감형 규정을 두어 음주자 단속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1759년(영조 35) 형조에서 범양죄로 처벌을 받은 자가 900여 명에 이르는 등 양조자가 급증했고 방자하게 거리에서 술주정하는 이들도 늘어났다.²⁷⁾ 영조는 술을 마시는 자가 없다면 술을 빚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양조자는 근절할 수 없더라도 사주자는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리에 사주자가 횡행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3일간 감선하고, 사주로 붙잡힌 사람은 형조에 명하여 세 차례 엄형에 처한 후 海島의 노비로 삼도록 지시했다.²⁸⁾ 결국 영조대 주금정책은 양주자 단속에서 음주자 단속으로 전환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마침내 홍주자 단속을 강화했다.

한편 1762년(영조 38) 형조판서 이지억이 도로에서 사주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근래 홍주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자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영조는 술주정한 자는 물론 買酒한 곳을 추문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했다.²⁹⁾ 같은 해 영조는 권극의 건의에 따라 범음자 가운데 심한 자를 호시로 일벌백계한다는 강력한 주금령을 선포했다.³⁰⁾ 이 조치

26)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0월 20일, 自今日以後, 釀酒被捉者, 嚴刑究問, 買飲者其若直招, 釀者除刑, 只施島配之律. 其買飲者, 嚴刑一次後, 永屬殘邑奴婢, 本以奴爲名者, 勿限年濟州定配, 或有以士爲名者, 嚴刑三次遠配, 而刊名青衿, 或有中庶爲名者, 嚴刑三次後, 勿限年充定水軍, 雖俸初試, 啓聞勿施, 而釀酒者刑問之後, 買飲人, 其不直招, 嚴刑三次後, 加其律, 永定其島奴婢事, 申嚴禁令. 噫, 刑者輔治之具, 于今暮年, 豈忍峻法於民? 此則周禮歲首懸法象 魏之意, 酒不能止, 國不能國故也. 其豈因此而無刑? 勿論士庶, 其若不犯, 此法, 何設哉? 以此曉諭中外, 王者之政, 勸與懲也. 既已懲, 亦何無勸, 雖不耐懲而欲飲者, 此令之後, 其若見賣酒, 告于法曹者, 非徒赦之, 啓聞施實事, 一體分付.

27)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1월 25일, 噫, 酒禁一事, 其禁幾年? 今猶不行, 幾番諭音, 幾番臨門? 非徒酒猶不止, **至於近來, 尤爲甚焉. 昔之不能使酒於道路者, 今則放恣其甚. 頃已論焉.**

28)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1월 23일, 上曰, 今聞犯釀勘律者, 至於九百餘人之多, 而前已論, 飲者若無, 何有釀者? 雖若此, 犯釀雖多, 使酒者無矣. 今則甚至於道中使酒人被捉者云. 是誰之愆? 寔予之過. (중략) 自惡之中, 心竊慨然, 心竊慨然. **其使酒被捉人, 亦令秋曹, 嚴刑三次後, 限己身爲奴海島.**

29)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8월 27일, 刑曹判書 李之億曰, 道上使酒者, 不可不嚴處矣, 近來酌酒歐人之狀, 較前甚多, 故敢達矣. 上曰, 亦當嚴繩, 而必推問其買酒之處, 一體查治, 可也.

이후 남병사 윤구연이 帥臣의 신분으로 犯釀하고 날마다 沈醉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懲一儆百 차원에서 남대문에서 즉결처벌되었다.³¹⁾ 이어서 영조는 위반자를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금형률을 마련하고, 형조와 한성부가 주관하던 주금 단속을 포도청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다. 즉 음주자는 양반과 하천 신분을 구분하여 포도청에서 체포하여 사건에 대한 초기를 작성해 보고한 후 하교에 따라 효시 또는 증곤으로 다스리도록 했다. 또한 술집에 출입한 자와 길 위에서 술주정한 자는 형조로 보내지 말고 포도청에서 시위·엄문하고 술기운이 있는 자는 증곤으로 다스리되 증곤으로 징치하지 않은 자는 아된 후에 처벌하도록 했다.³²⁾

〈표 1〉 1762년(영조 38) 음주자 처벌 규정

유형	신분 및 행위	처벌 절차 및 내용
음주자	兩班	捕廳 草記 → 當埃下教 → 梟示重棍 舉行
	下賤	捕廳 重棍
		三次 被捉者 草記 → 埃處分 → 梟示重棍
酒家出入者·街上使酒者	勿送秋堂, (捕廳)施威嚴問 → 只有酒氣者, 隨現重棍 → 重棍而不懲者, 亦爲以聞	

이 조치는 포도청이 주기출입자, 가상사주자를 체포하면 형조로 이관하지 않고 직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단속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또한 1763년(영조 43) 개정된 형률은 거리에서 사주하고 장사에서 서로 싸우는 부류는 초범자는 엄형 1차, 재범자는 엄형을 추가했다.³³⁾ 개정 형률은 흥주에 관한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재범자에게 엄형

30)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9월 4일.

31) 차인배, 앞의 논문, 67~69쪽.

32)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9월 20일, 噫, 昨已論, 其無飲者, 豈有釀者? 分付左右捕廳, 勿論晝夜, 潛入故酒家者, 其人必犯飲者, (중략) 非徒入酒家, 街上使酒者, 勿送秋堂, 施威嚴問, 只有酒氣者, 隨現重棍, 重棍而不懲者, 亦爲以聞. (중략) 亦將此意, 嚴飭曉諭事, 令秋曹分付八道及兩都.

33) 『秋官志』 卷9 掌禁部 法禁 酒禁 七則;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2월 4일.

1차를 추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았다.

3. 홍주범죄의 증가와 율령 강화

1) 정조대 홍주범죄 증가 『대전통편』

1777년(정조 1) 대전별감 박유춘이 거리에서 홍주하며 행인을 구타해서 금리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내뱉고 이례를 구타하고 심지어 관정에 올라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 정조는 액례의 횡행·홍주·작나·가로침학 등의 비행이 증가한 이유를 지휘관인 장봉익이 위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박유춘을 형조로 보내 금령 위반과 범행을 낱낱이 밝히도록 지시했다.³⁴⁾ 형조의 조사에서 박유춘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네 차례 신장을 받고 그동안 자신과 동료들이 저지른 비행을 낱낱이 실토했다. 그들의 비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別監 梁禧昌 等 10명이 摠府 앞길에서 서로 힐난하다 주먹질함
2. 姜壽大가 청루에서 소란을 피우고 가산을 파손함
3. 대전별감이 장무역관에서 情債을 받는데, 역관이 단지 10냥만 지급하자 별감이 30냥을 받으려고 서로 爭詰함
4. 작년 가을, 司隲寺書員이 例情勵造를 바치지 않아 좌변장무·우변행수 등이

34) 『승정원일기』 정조 1년 7월 12일, 徐有防, 以刑曹言啓曰, 別監朴有春, 街上酗酒, 毆打行人, 爲禁吏所捉來, 則發惡官庭, 言辭悖慢, 毆打吏隸, 至欲陸廳作拏, 極爲駭然, 不可以一時酗酒處之, 照法嚴勘, 何如? 傳曰, 頃於掖隸橫行之時, 無敢酗酒, 無敢作拏, 亦無敢肆虐於街路者, 卽渠輩所謂聞張大將三字, 則畏之, 轉相告戒放也, 況今操切掖屬之時, 有此頃者所無之博學, 豈其掖隸之豪悍, 勝於頃者而然乎? 刑判之威令, 減於頃者而然乎? 究厥弊源, 無出於二者之間, 可勝駭嘆, 此漢若復尋常處之, 何以懲戢乎? 當該別監朴有春, 姑勿照律, 爲先嚴刑取招, 捧供以聞, 問以有何頑惡蔑法犯禁, 至於此極之委折及現捉之事若此, 則此外必有許多作弊之事, 前後作罪情節, 一一從實直告之意, 亦爲嚴問, 期於取服, 渠以座高別監若此, 則他別監之種種不法之狀, 明若觀火, 一一指名現告之意, 箇箇嚴刑, 捧查招後, 修啓目可也.

본사에 찾아가 6냥을 대신 討出함

5. 금년 봄, 최창록가 예봉훈조를 6석 외에 1석을 추가로 받음
6. 작년 여름, 羅昌兼을 길에서 만나 주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술상으로 주모를 폭행함
7. 金光祐가 乘醉하여 金內官家에서 소란을 피운 일
8. 작년 가을, 강수대와 송교의 주가에 가서 예조 서리 廉哥와 相關한 일³⁵⁾

박유춘의 공초로 집단폭행, 무단난입 및 파손, 정채 및 예봉훈조 징수, 주모 폭행 등 액례의 비행이 모두 드러났다. 특히 액례의 범죄 중 6~8번의 사례처럼 술집에서 주모를 폭행하거나, 타 관청의 하례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고, 술에 취해 내관의 집에 찾아가 행패는 부린 사례도 확인된다. 결국 박유춘은 술주정한 죄와 불복항거한 죄 등이 추가되어 최종 장 70에 도 1년 반에 처해 예산현으로 유배되었다.³⁶⁾

이후 사주에 관한 규정은 정조대 『대전회통』에 “길 위에서 술주정하는 사람은 장형 100에 처한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다.³⁷⁾ 또한 1782년(정조 6)에는 “군관 및 액례 등이 술주정하거나 싸울 경우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번 발각되면 결장과 함께 태거(汰去) 또는 유배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추가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 집권 후반에도 서울의 흥주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살육사건에 관한 판부를 검토했는데, 5건의 사건 가운데 술주정이 원인이었던 것이 4건일 정도로 흥주의 폐해가 심각했다. 그는 이러한 원인을 포도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정조는 포도청이 낮에 잠거나 술을 마셔도 눈감아 주고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포교의 무리가 잠기를 단속한다는 핑계로 장기를 두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여염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조는 이에 대한 조치로

35) 『秋官志』 卷8 考律部 續條六 官掖.

36) 『승정원일기』 정조 1년 7월 16일.

37)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금제(禁制).

향후 도성 안팎에 잡기나 술로 인한 싸움이 있으면 해당 포도대장을 엄하게 감처할 것을 지시했다.³⁸⁾

한편 포도청이 흥주자 단속에 紅索을 사용해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오라줄은 주로 절도, 招引人物, 奸騙良女 등의 강력 범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시기 신분을 가리지 않고 길가에서 흥주하는 자는 모두 이것으로 포박하는 등 과도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당시 풍토상 오라줄에 한번 묶여 체포되면 친척들이 등을 돌리고 이웃들이 천시하는 등 허물로 여기는 풍조가 있어 포도청이 흥주자를 과도하게 단속하여 민들의 불만이 쌓이기도 했다. 이에 정조는 포도청이 흥주를 금한다는 명분으로 사적인 분풀이로 백성들을 침탈한다고 힐책하고 흥주자 체포에 오라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³⁹⁾

2) 순조대 『형전사목』의 흥주자 처벌 수교

19세기 『형전사목』에 규정된 하례들의 작폐와 흥주에 관한 사례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9개 조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각 도감에서 습례할 때 무예별감이 착금하지 않고 술에 취해 난입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作拏하는 자는 정배한다.
- 2) 무예별감이 방자하게 술에 취해 곧바로 계관 앞에 이르는 자는 어재소에 맘대로 들어온 죄로 未過門限律로 장 100, 유 3000리에 처한다.
- 3) 무예별감이 주가에 출입하여 作梗한 자는 엄하게 곤장을 치고 정배한다.
- 4) 액례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쟁흥하고 의금부 도사 직소에 난입한 자는

38) 『일성록』 668책, 정조 24년 4월 29일; 『일성록』 668책, 정조 24년 4월 30일.

39) 『일성록』 0671권, 정조 24년 5월 2일 上護軍 李秉鼎啓言 捕廳紅索 卽捕盜之具 平民一番 被縛便作 終身之累 親戚棄之 隣里賤之 除非干連竊盜 及招引人物 奸騙良女等罪 則有不容一例縛去 聞街上 酗酒者 間多閭巷衣冠之類 而見捉於捕廳之禁 則輒皆縛以紅索云. (중략) 教以 名以禁酗酒擾民之 故致有卿言 近日行公捕將從重推考 奚特酗酒乎 以不干之事 侵撓平民 必是校卒輩逞私憤之致 各別嚴禁之意 嚴飭捕將.

私出入官府律에 따라 관부를 능범한 것으로 常人에 견주어 1등을 추가하고 장 60 도 1년형에 처한다.

- 5) 액례가 술에 취해 사대부의 회유처(會遊處)에 갑자기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 嚴刑定配한다.
- 6) 액례가 가로에서 술에 취해 閭家에 들어가 평민을 난타하면 엄형정배한다.
- 7) 주금시에 액례가 과오를 범한지는 엄형 3차 후에 절도정배하고 頭目을 신칙하지 않으면 엄근정배하고 司謁은 勘配한다.
- 8) 사헌부 이례가 액례를 구타하는 자는 엄형정배하고 買醉한 액례 역시 동을로 다스린다.
- 9) 기우제의 수향소에 강제 하리가 단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취한 자는 엄형정배한다.⁴⁰⁾

『형전사목』 『수교사목』은 순조대 술과 관련된 금지 규정으로 무예별감·액례·이례·하리 등 술을 마시고 범한 각종 비행과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실제 범인과 사건 내용 및 처벌 등에 관한 정보는 『승정원일기』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의 사례는 1820년(순조 20) 무예별감 태명철이 승정원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술에 취해 계관전까지 들어온 사건으로 결장100도 후에 철산현으로 유 3천리로 정배되었다.⁴¹⁾ 3)의 사례는 1830년(순조 30) 무예별감 신계홍·최덕광 등이 酒家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반노 협동을 구타한 죄로 체포되어 훈국에서 엄근 50도 후에 영해부로 정배되었고,⁴²⁾ 아울러 협동도 호환의 부류로 우림위 군사를 구타한 죄로 군문에 보내 엄근 50도 후에 창성부 정배되었다.⁴³⁾ 4)의 사례는 1802년(순조 2) 별감 황재모가 紅衣 차림

40) 본 규정은 『형전사목』 『수교사목』 중 흉주(사주) 관련 내용만 선별해 정리했다(법제처, 『법제자료 82집 (국역)형전사목·흉흉전칙』, 1976).

41) 『승정원일기』 순조 20년 1월 18일; 『승정원일기』 순조 20년 1월 24일.

42) 『승정원일기』 순조 30년 4월 18일.

43) 『승정원일기』 순조 30년 4월 18일.

으로 만취한 채 의금부 도사 직소에 난입하여 자신을 때린 의금부 부례를 찾아 소란을 일으켰다. 황재모는 의금부 고직 주만철과 노상에서 서로 힐난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고직이 구타하고 도주하자 그를 쫓아 부내로 난입했다. 별감 황재모는 어떤 이유로든 의금부 근처에 난입할 수 없다는 칙령을 어겼다. 따라서 의금부 고직 주만철은 『대명률』 투구조에 따라 결장 100도 후, 또 3년에 처해 부여현으로 정배되었고, 별감 황재모는 『대전통편』 금제 조 “관부를 능멸한 상인은 1등을 가한다”는 조항에 따라 장 100에 1등이 추가되어 결장 60도 후 또 1년에 처해 양구현으로 정배되었다.⁴⁴⁾ 5)의 사례는 1803년(순조 3) 액례 박윤희가 사대부의 會遊處에 난입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죄로 엄형 후에 곤양군으로 정배되었다.⁴⁵⁾ 6)의 사례는 별감 최명국이 使役に 힘쓰지 않고 거리에서 만취해 평민을 난타하고 여항의 7~8가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의금부에 난입해 소란을 일으켰다. 형조는 최명국의 죄상을 밝힌 후 전교에 따라 엄형 1차 후에 고창현로 정배보냈고, 아울러 사약 박홍석과 두목별감 이수백 등은 『대명률』 不應爲條에 따라 장 80으로 처벌하고 율에 따라 감처했다.⁴⁶⁾ 7)의 사례는 1810년(순조 10) 주금이 발령된 시기에 별감 최성유·임치형·박도향·이명순 등이 거리에서 ‘爛爛泥醉’한 상태로 술주정하여 금례에게 체포되었다. 순조는 액례의 죄과 중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주금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들은 주금령이 내려진 시국에 술을 구입할 방법이 없자 옛 동료 별감 이명순의 집에서 술을 빚어 마셨고, 돌아오는 길에 붙잡혔다. 형조는 최성유 등 4명을 훈국에 보내 회시하고 엄곤 후, 최성유는 녹도진에, 임치형은 임자도진에, 박도향은 지도진에, 이명순은 고금도진 등에 각각 절도정배했다.⁴⁷⁾ 8)의 사례는 1816년(순조 16) 사헌부 소유 이홍창·심철대·박동원 등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 액례 김창손을 구타한 사건으로 각각 장 100도 이후에 이홍창은 운봉현에, 심철대

44) 『승정원일기』 순조 2년 9월 22일.

45) 『승정원일기』 순조 3년 3월 6일.

46) 『승정원일기』 순조 9년 1월 20일.

47) 『승정원일기』 순조 10년 5월 1일.

는 영천군에, 박동원은 삼화부에 각각 정배되었고, 아울러 買醉始闕한 액례 김창손도 엄형 1차 후 숙천부로 정배되었다.⁴⁸⁾ 9)의 사례는 1808년(순조 8) 비변사에서 낭청을 보내 祈雨祭 受香處를 직간하는 과정에서 楸子島 受香所의 祭監下吏 양덕우가 壇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취한 채로 흥주하다 발각되었다. 이에 순조는 사안이 비록 미미하지만 경건한 장소에서 하리가 이런 일을 벌였다며 엄중히 처리하고 차후에 이런 사건을 철저히 적발해 처벌하도록 하였다. 결국 양덕우는 『대전통편』 제례조에 따라 엄형 1차 후에 함종부로 정배되었다.⁴⁹⁾ 이처럼 순조대 하례의 흥주 관련 범죄의 내용과 유형 및 처벌에 관한 『형전사목』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위 규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역은 무예별감과 액례 그리고 사헌부 이례 등 국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하례와 관련된 비행이 많았다. 국왕을 호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무예별감과 궁궐의 잡무를 수행했던 액례는 하위직에 속했지만, 그들이 소속기관을 뒷배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그들은 방과 후 여항에서 흥주·폭행·후욕 등 하례와 백성을 상대로 비행을 일삼는 사례가 많았다.

둘째 하례의 음주 정도는 ‘乘醉’(1, 2, 5), ‘泥醉’(4, 6), ‘買醉’(8), ‘會飲’(6), ‘醉醜’(9) 등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어재소와 의금부 같은 곳은 별감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평소 불만을 가졌던 동료 및 상관에게 술기운을 빌어 욕설하고 반항하는 등 숨겨진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셋째 하례의 흥주 유형은 攔入(1, 2, 3, 4, 5, 6), 作拏(1, 4, 5), 폭행(3, 5, 8), 후욕(5), 범주금(7), 불경(9)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표출되었다. 특히 하례들은 훈련도감 습례, 승정원, 의금부, 사대부 회유처 등 평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술주정의 형태도 소란·후욕·폭행·불경 등 술을 마시고 상대를 괴롭히는 행

48) 『승정원일기』 순조 16년 1월 21일.

49) 『승정원일기』 순조 8년 윤 5월 24일.

등을 반복했다.

넷째 원래 가로 홍주범에 대한 처벌은 장 100으로 처벌했는데, 하례의 홍주범은 주로 장형과 도배 및 정배형으로 비교적 무겁게 처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가운데 승정원 계판에 무단으로 난입한 태명철의 경우가 가장 무거운 장 100에 유3천리를 처벌받았다. 의금부에 난입한 무예별감 황재모의 처벌은 장 100에 해당하지만, 『대전통편』의 금제조 관부 능멸에 관한 죄목이 추가되어 1등을 추가하여 장60에 도 1년형에 처해졌다.

한편 1865년(고종 2) 제작된 『육전조례』에는 여러 위조범과 경제사범, 사학죄인 등과 17건의 금조항목에 홍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865년(고종 2) 『右捕廳謄錄』과 1866년(고종 3) 『左捕廳謄錄』에도 증도와는 별도로 규정된 금조 항목에도 홍주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이처럼 18세기 홍주가 일종의 범죄로 인식되면서 율령이 마련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통제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19세기에는 포도청의 금조에 홍주를 상시적 단속 항목으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4. 도성 내 홍주 실태

1) 홍주 범죄의 시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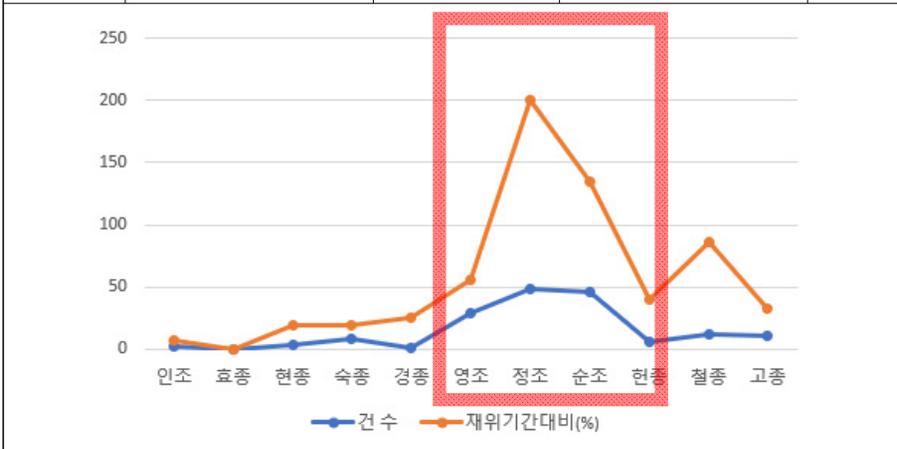
조선후기 도성 내 홍주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 인조~고종 연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자료와 『추관지』, 『형전사목』 등의 법률서 등에 등장하는 사주·홍주 사건 약 167건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들 사례

50) 『左捕廳謄錄』 15권, 1866(고종(고종3), 11월 19일, 奎15145-v.1-18, 1b-2a쪽), 戢盜, 逆獄私(邪)學, 御寶及印信偽造, 潛造紅蔘, 公穀防納, 偽科, 穀物和沙和水, 潛釀三玄酒, 私鑄錢, 潛壘屠, 西北人招引人物, 都買物件操縱, 彼人犯越交易, 巫女, 酗酒, 雜技, 劫奸女人: 『右捕廳謄錄』 20권, 1865년 6월 1일, (奎15144-v.1-30, 34b-35a쪽), 御寶偽造 偽科偽札 穀物和沙和水 印信偽造 紅蔘防納 私鑄錢 和屠壘屠 西北人招引人物 酗酒雜技 彼人交易唐物, 巫女邪學 都買物件操縱 騙取人財 誨淫和奸.

는 흉주범의 소속과 신분, 범죄 유형, 흉주 유형 및 범죄 발생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처벌 내용 등으로 재분석하여 유형별 특징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후기 흉주 사건을 세기별과 왕대별로 건수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다.

〈표 2〉 왕대별 흉주 건수와 재위 기간별 비율

세 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왕 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
재 위	27	10	15	46	4	52	24	34	15	14	47	-
건 수	2	0	3	9	1	29	48	46	6	12	11	167
비 율%	7.4	0	20	19.5	25	55.7	200	135.3	40	85.7	32.4	-
세기소계(%)	14(8.4)				78(46.7)			75(44.9)				167(100)



17세기 흉주 발생 건수가 14건으로 17~19세기 전체의 8.4%이며, 왕대별 재위기간 대비 연평균 발생 건수는 인조대 7.4%에서 현종대 20%, 숙종대 19.5%등으로 17세기 후반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18세기 흉주 발생 건수가 78건으로 17~19세기 전체의 46.7%이며, 왕대별 재위기간 대비 연평균 발생 건수는 경조대 25%, 영조대 55.7%, 정조대 48% 등으로 영조대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정조대 최고조에 달해 이전 세기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19세기 홍주 발생 건수가 75건으로 17~19세기 전체의 44.9%이며, 왕대별 재위기간 대비 순조대 135.3%, 현종대 40%, 철종대 85%, 고종대 32.4% 등으로 순조대까지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다가 현종대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후 철종~고종대 증감을 반복했다.

인조~경종대 걸친 17세기와 18세기 전반까지 홍주 발생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현종대와 숙종대부터 조금씩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조~순조대에 걸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약 110년 동안 홍주범 발생 건수가 123건으로 전체 167건 대비 73.6%로 그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현종대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그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소폭씩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인조~고종 연간 홍주 건수의 증감 추이는 술 문화의 확산 및 주금정책의 변동과 밀접히 관련하여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술의 생산·유통·소비 등 술 문화가 급속히 활성화됨에 따라 절대적 음주자 인구가 증가했고 자연히 홍주 범죄 또한 이에 비례해서 증가했다. 즉 18세기 사대부 사이에 명류의 음주를 추종하는 숭음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술의 소비는 물론 紅·白露酒와 같은 고급주에 대한 선호가 늘었을 뿐 아니라 사대부가의 매주도 성행하여 심지어 사람들이 양반집 대문 높은 기둥을 ‘鬪酒大門’이라고 풍자하기도 했다.⁵¹⁾ 또한 서울의 열에 여덟, 아홉 집이 酒燈을 달고 술을 파는 주가가 급격히 늘어남⁵²⁾에 따라 도성민이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음주가 일상화됨에 따라 취객의 술주정은 늘어날 수밖에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둘째 영조대 홍주 건수의 상승은 주금정책의 추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영조는 집권 전반기에는 계주령을 통한 느슨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1755년(영조 31) 제주를 예주로 대체한 집권 후반에는 전면적 주금령을 공

51) 차인배, 앞의 논문, 55쪽.

52)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1월 22일.

포한 강경한 통제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⁵³⁾ 영조대 흉주 사건 총 29건 중에 약 70%를 차지하는 20건이 영조 31년 이전에 발생했지만, 나머지 9건은 강경한 주금정책이 이후에 발생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다시 말해 영조의 강경한 주금정책은 흉주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영조 집권 말년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정조가 주금령을 해제하고 주금형률을 형해화함에 따라 흉주 범죄가 급증했다. 즉 정조는 주금령이 백성을 ‘귀찮게 한다(擾民)’는 이유로 발령을 통제했고, 심지어 잦은 주금령이 오히려 법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이를 해제하기도 했다. 즉 계방과의 결탁한 금리가 거짓 주금령을 여항에 퍼트리면, 소민들은 단속을 피해 술을 버리거나 숨기는 등 술 유통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때 계방은 금리의 비호하에 술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고가로 술을 판매하여 많은 이득을 챙기는 조직적 비리를 주도했다. 따라서 정조는 주금령이 이러한 폐단을 부추기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주금령을 극도로 자제했다.⁵⁴⁾ 이처럼 정조는 주금령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억제되었던 술의 생산과 음주가 활발해졌고, 흉주 범죄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넷째 정조대 각종 궁중 행사와 빈번한 능행으로 무예청과 액정서 별감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흉주 범죄가 증가했다. 무예청·액정서 별감은 국왕과 궁궐 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일정한 특권을 갖기도 했지만, 정조대 사도세자의 신원과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등 각종 의례와 행행의 시행으로 그들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했다.⁵⁵⁾ 정조대 발생한 전체 흉주 사건 48건 가운데 별감·액례와 관련된 사례가 23건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조대 흉주 건수 29건 중 별감과 액례의 범죄가 9건에 불과한 점과 대비된다.

다섯째 정조대에 비해 순조대 흉주범죄가 소폭 감소했지만, 별감·액례의

53) 차인배, 앞의 논문, 64쪽.

54) 차인배, 위의 논문, 71~72쪽.

55) 이근호 외, 『한양의 중심 육조거리』, 서울역사박물관, 2020, 3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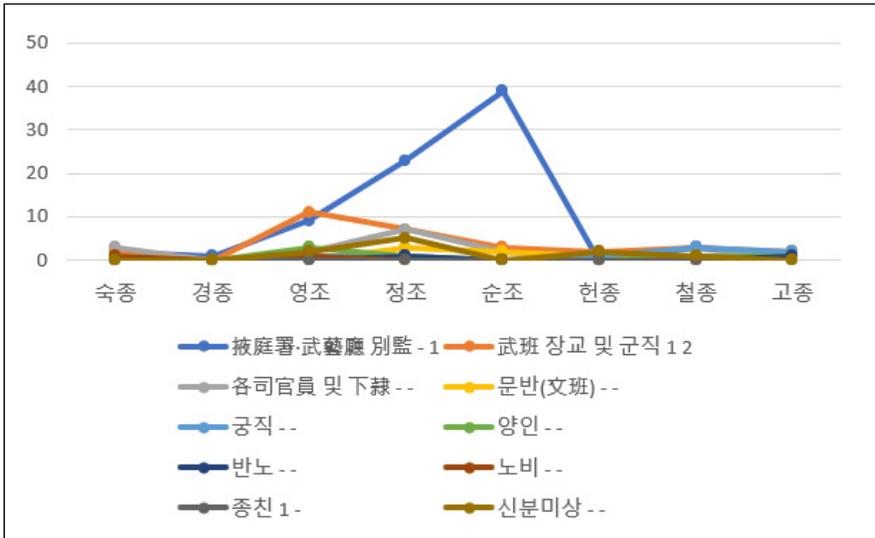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조대 별감과 액례의 흥주범죄 증가 추세가 지속하는 양상으로, 순조대 세도 정권이 득세하면서 대왕대비전·왕대비전 별감의 권세가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순조대 흥주범죄 46건 가운데 별감의 사례가 무려 39건으로 전체 약 8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시기 별감의 음주와 비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 흥주 범죄의 직역별 추이

흥주 범죄에 관련된 자들의 직역 및 신분을 직군별로 보면, 종친, 문반, 무반 장교 및 군직, 액정서·무예청 별감,各司官員 및 下隸, 宮屬, 양인, 반노, 노비 등과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부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흥주 범죄 167건을 직군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왕대별 분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조~고종년간 흥주의 직군별 분포

직역	인조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총계(%)
掖庭署·武藝廳別監	-	1	2	1	9	23	39	-	3	1	79(47.3)
武班 및 군직	1	2	2	-	11	7	3	2	3	2	33(19.7)
各司官員 및 下隸	-	-	3	-	2	7	2	-	1	2	17(10.1)
文班	-	-	1	-	-	3	2	1	-	2	9(5.3)
宮屬	-	-	-	-	1	1	-	1	3	2	8(4.8)
良人	-	-	-	-	3	1	-	-	1	1	6(3.5)
泮奴	-	-	-	-	-	1	-	-	-	1	2(1.2)
奴婢	-	-	1	-	1	-	-	-	-	-	2(1.2)
宗親	1	-	-	-	-	-	-	-	-	-	1(0.5)
신분 미상	-	-	-	-	2	5	-	2	1	-	10(5.9)
왕대별 소계	2	3	9	1	29	48	46	6	12	11	167(100)



* 전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추관지』, 『형전사목』 등 흥주 사건에 관한 167건의 사례를 지역과 신분별로 분류함

** 각 지역의 건수는 전직관을 포함한 숫자임

흥주 사건 건수가 가장 높은 직군은 별감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반 및 군직 33건, 각사 관원 17건, 문반 9건, 공직 8건, 양인 6건, 노비 2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상위에 있는 별감, 군직, 하례 등의 흥주 건수는 총 129건으로 전체 대비 77.2%로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별감은 47.3%로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다. 이들 직군은 주로 궁궐과 왕실, 군영, 각사 등에서 실무를 관장하는 관원으로, 비록 하급 관료 신분이지만, 소속 기관의 권위를 배경으로 민간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들은 방과 후 여향의 주가를 출입하며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르면 권세를 이용해 갖은 비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액례의 민간에 대한 별감의 침착은 고질적 폐단이었고, 국왕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단속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액례가 미천할지라도 궁궐의 공무를 수행한 이상 천대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예컨대 우포도청 5패 군관 김윤서가 밤 2경에 순라를 돌던 중 新門 밖 미정동 근처에서 무예별감 김영원이 몹시 취한 상태로 아금을 어기고 지나가는

것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군관이 신분을 묻자 김영원은 자신이 대전별감 신분임을 밝힌 후 곧바로 들을 들어 순라꾼의 왼쪽 눈 위를 내려치고 욕을 퍼부었다. 군관은 김영원이 야금을 범한 것은 물론 순라꾼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붙잡아 포도청에 수감했다. 포도대장 장봉익은 김영원에게 족장으로 처벌한 후 초기를 작성해 영조에게 보고했다. 초기를 받아 본 영조는 장봉익이 私感을 가지고 범야에 대한 更數에 근거하지 않고 더구나 도적이 아닌데 족장(난장)을 사용한 점을 비판하고, 장봉익에게 그 책임을 물어 추고하였고, 해당 부장은 곤장을 쳐 태거하도록 지시했다.⁵⁶⁾

이처럼 대전별감의 흥주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피해를 당한 단속기관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포도청 관원에게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별감의 기세가 높았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지나 김영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우포도청에 난입하여 죄수의 적간을 빙자해 뇌물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⁵⁷⁾

3) 흥주 범죄의 유형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에 따라 술버릇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폭행,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흥주의 유형은 대체로 作拏·起鬪, 난입, 폭행, 폭언·능멸, 고성·고함, 투구, 발검, 성폭행, 기물파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술주정 유형 중에 어떤 행위를 가장 많았을까? 흥주 사건 167건 가운데 1건당 2개 이상의 범죄 유형으로 표출될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개별 건수로 모두 합산하면 총 246건을 확인할 수 있다.

56) 『승정원일기』 영조 1년 9월 12일;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0월 4일.

57)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월 19일.

〈표 4〉 흥주의 유형 및 범죄 현황

분류	건수(%)
(일방)폭행	51(20.7)
작나·기노	36(14.6)
욕설 폭언·능멸	33(13.4)
난입	29(11.7)
통금위반	19(7.7)
변복	18(7.3)
집단	16(6.5)
고성·고함	14(5.7)
(상호)투구	10(4.0)
발검	8(3.2)
여성범죄	5(2.0)
단순 음주 매주	4(1.6)
기물파손	2(0.8)
탈취 절도	1(0.4)
총계	246(100)

* 전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흥주사건 가운데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76건을 내용별로 분류 함

** 흥주 사례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을 별개로 계산함

술주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폭행, 작나·기노, 욕설·폭언, 주거지 난입, 통금위반, 변복, 고함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빈도는 낮지만 발검과 성범죄 등도 확인된다. 특히 폭행은 주로 음주자가 술에 취해 시비 끝에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례로써 전체 유형 가운데 51건(2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왕대별 발생 건수는 현종 1건, 영조 13건, 정조 9건, 순조 16건, 헌종 3건, 철종 5건, 고종 4건 등의 순서로 확인된다. 특히 영조~순종 연간 38건으로 전체 비중이 높고 순종대 16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아 전체 흥주 사건 발생 추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폭행자의 신분은 별감이 25건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무반 군직 11건, 문관 및 유학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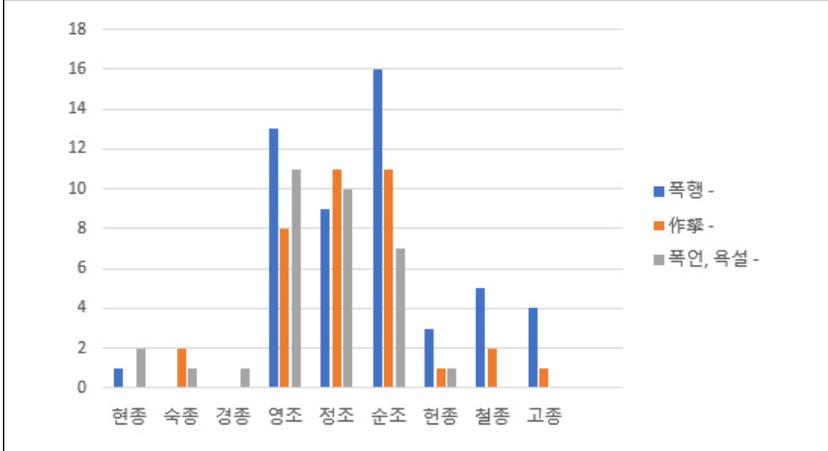
하례 4건, 무뢰배 및 신원미상 4건, 양인 1건, 정비죄인 1건, 반인 1건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영조~순조 연간 홍주 중 폭행 사건은 대체로 별감과 무반 군직과 하례 등 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행은 주로 홍주와 범야를 단속하는 단속관원을 상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길거리 행인을 상대로 벌이는 사례도 많았다. 폭행은 피해의 옷을 찢고(破傷衣服), 뺨을 때리고(數次批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拳毆足踢), 심지어 돌로 내려치고(石塊打破) 칼을 휘두르는 등 다양한 폭행이 동원되었다. 피해자는 폭행 정도에 따라 얼굴에 유혈이 낭자하고(面部左目上 流血浪藉), 머리에 상처가 나고(頭而傷之), 머리가 깨지고(頭骨破碎),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편 홍주 중 소란을 일으키는 작나·기노의 사례도 36건으로 전체의 14.6%에 이른다. 왕대별 발생 건수는 숙종 2건, 영조 8건, 정조 11건, 순조 11건, 헌종 1건, 철종 2건, 고종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별감 19건, 군직 6, 궁속 3, 하례 1, 노비 3, 기타 신원미상 4건 등으로 확인된다. 작나의 사례도 영조~순조 연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별감과 군직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나의 형태는 술기운이나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乘醉作拿)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거리에서 민간에게 소란을 피우고(醜挈街路, 作弊民間), 형조·병군·집고처·의금부 등에 난입하여 소동을 일으키는(突入刑曹內 醜挈, 兵軍點考處, 無端作挈作挈王府) 등 보다 과격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폭언과 욕설의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13.4%에 이른다. 왕대별 발생 건수는 헌종 2건, 숙종 1건, 경종 1건, 영조 11건, 정조 10건, 순조 7건, 헌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별감(액례) 20건, 군직 10건, 원예 1건, 궁임 1건 등의 순이다.

〈표 5〉 왕대별 폭행, 작나, 욕설 등 범죄 현황

유형	왕대										총계(%)
	인조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暴行	-	1	-	-	13	9	16	3	5	4	51(20.7)
作拳	-	-	2	-	8	11	11	1	2	1	36(14.6)
詬辱	-	2	1	1	11	10	7	1	-	-	33(13.4)



요컨대 흥주의 주요 범죄는 폭행, 작나, 후욕 등이 120건으로 전체의 71.8%에 이르는 주된 비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흥주범죄는 현종~경종 연간에는 비교적 낮은 빈도였지만, 영조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순조대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헌종~고종연간에는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요 범죄의 직군별 추이 역시 별감과 균직 타 직군보다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흥주 범죄는 犯夜 19건, 白衣 18건, 고성, 14건, 투구, 10, 拔劍 8건, 여성관련 5건, 매주 4건, 기물파손 2건, 탈취 2건 등 다양한 비행 양상을 동반했다. 특히 음주 후 범야를 하는 사례 19건 중에 별감의 위반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들 중 8건은 흥의를 착용하지 않고 백의 차림으로 체포되었다.⁵⁸⁾ 흥주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25건인데, 그 시간대는 2경의 사례가 가장 많은 13건으로 확인되었고, 초혼 및 초경의 사

례가 8건, 3경은 2건, 효두는 2건 등으로 파악되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18~19세기 음주의 폐단 가운데 하나인 술주정(使酒·酏酒)을 정책적 및 법률적 대응을 살펴보고, 나아가 도성 내 다양한 홍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태를 고찰하였다.

홍주에 대한 대책은 주금정책의 일환에서 음주의 폐단 중 하나로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통제 대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영조 집권 초반 주금정책은 강경한 주금령을 자제하고 완만한 계주령을 통해 스스로 절제하는 교화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술의 제조와 소비가 확대되면서 최소한의 통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양주와 사대부 매주 등에 대한 금령을 내려 폐단이 정도가 심각한 영역을 부분적으로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의 폐단으로 발생하는 酏酒(使酒)를 추가로 금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1755년(영조 31) 강경한 주금령이 공포되면서 홍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홍주자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심지어 이로 인한 범죄와 소송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영조와 대신들은 술을 광기와 범죄의 원상으로 인식하여 강력히 통제하고자 했다. 1762년(영조 38) 영조는 정도가 심한 양주자와 음주자를 효시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거리에서 술주정하는 자를 重棍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1763년(영조 43) 주금에 관한 형률이 개정되면서 사주자에 관한 처벌이 보다 무겁게 규정되었다. 즉 거리에서 사주하여 서로 싸우는 자는 초범자는 엄형 1차, 재범자는

58) 별감의 범야자 가특히 별감의 복장은 소속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모자와 의복을 달리했다. 1778년(정조 2) 액례는 번거롭게 갈아입었던 복장이 紅衣 한가지로 통합되어 두건과 붉은색 直領을 착용했고, 무예별감은 草笠에 虎鬚을 꽂은 모자를 쓰고, 天翼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화려하고 독특한 복장은 여타 하례와는 확연히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 도성의 발거리에서는 특권의 상징이 되었다. 액례는 주야를 불문하고 국왕의 호위와 왕실의 잡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홍의를 착용한 이상 범야(犯夜)에 대해 면책되었다(차인배, 앞의 글, 320쪽).

형1차를 추가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결국 영조대부터 점차 강화되었던 흥주자 처벌 규정은 1789년(정조 9) 반포된 『대전통편』에 술주정한 자는 장 100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순조대 들어 흥주 범죄가 더욱 증감함에 따라 수교를 통해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더욱 늘어났다. 『형전사목』에는 하례들의 흥주에 관한 9건의 규정이 명시되어 강력히 통제하고자 했다.

한편 인조~고종 연간 도성 내 흥주 사건 167건을 분석한 결과 영조대부터 순조대까지 전체 흥주 건수의 73.6%에 달할 정도가 가장 극심했다. 또한 흥주 범죄의 직역별 추이를 보면 액정서, 무예청 별감이 47.3%로 거의 절반에 차지했고, 다음으로 무반 군직, 각사 하례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흥주 범죄의 유형은 주로 폭행이 가장 많은 51건이었고, 작나가 36건, 욕설이 33건, 난입이 29건, 통금위반이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18~19세기 주금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흥주 범죄에 관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별도로 서울의 흥주 범죄는 급증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흥주의 주요 범인은 주로 국왕과 궁궐의 권위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별감이었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受教輯錄』, 『續大典』, 『大典通編』, 『秋官志』, 『六典條例』, 『秋書決獄錄』, 『刑典事目』, 『星湖僿說』, 『經書類抄』, 『眉庵先生集』, 『五龍齋遺稿』, 『建陽元年漢城府戶籍』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강명관, 『조선풍속사 3 - 조선사람들 헤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푸른역사, 2010.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2002년.

김대길, 『조선후기 주금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50, 한국사학회, 1995.

_____, 『조선후기 우금 주금 송금 연구』, 경인문화사, 2006.

김준혁, 『조선시대 선비들의 탁주 이해와 음주문화』, 역사민속학 제46, 2014.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의 시행양상』,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과 시행양상』, 『전북사학』42, 전북사학회, 2013.

배진아, 『조선후기 음주문화와 금주령』,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서울문화사학회,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 1, 2, 어진이, 200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 스왈른 수집본』, 2008.

유승희, 『17~18세기 아금제의 운영과 범야자의 실태 - 한성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87, 2013

유옥경, 『朝鮮 後期 風俗畫에 나타난 酒壚의 視覺的 再現』, 『미술사논단』 27, 2008.

_____, 『조선후기 풍속화의 農繁期 들밥(饘)과 술(酒)』, 『미술사학』 2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李能和 著, 李在崑 옮김, 『조선해어회사』, 동문선, 1992.

이정수, 『16세기의 금주령과 검약령』, 한국중세사연구 14(한국중세사학회, 2003).

정구선, 『조선 왕들, 금주령을 내리다: 조선왕조실록으로 들여다보는 조선의 술 문화』, 팬덤북스, 2014.

鄭大溶, 『조선 초기 금주령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병설,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문학동네, 2012.

朝鮮總督府法務局行刑課, 『司法制度沿革圖譜』, 1937.

주영하, 『식탁위의 한국사 - 메뉴로 본 20세기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3.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아순활동과 아금정책의 변동』, 『한국학연구』 39, 2015.

_____, 『18~19세기 주금정책의 추이와 주금형을 제정』, 『법사학연구』 65호, 한국법사학회, 2022.

한상권, 『조선시대 교화와 형징』, 『역사와 현실』 79, 2011.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3: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18th~19th Century Drunkenness(酩酊酒) Laws and Its Status

Cha, In-bae*

This thesis has contemplated the shift in the policies to prohibit alcohol consumption with the focus on odd behavior from alcohol consumption as one of the ill-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in the 18~19th centuries under the perspective view of history of legal system.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statistics on cases of alcohol related issues arising within the palace during the late Joseon Era to analyze the identity, occupation, type of odd behavior after drinking, crime, punishment and so forth of the alcohol consumer to analyze its status. The policy on alcohol ban in early Joseon Era was rather passively controlling with the focus more on rendering relief in response to disaster. However, in the late Joseon Era, the drinking culture dissipated the country to impact on individuals deviating from their normal behavior as well as causing adverse influence in the society. Therefore, the policy on alcohol ban was shifted from the scheme of banning to manufacture alcohol toward the ban of consuming alcohol at all, and furthermore, it made the turn to aggressively controlling those intoxicated persons who drink alcohol and act with odd behavior from drinking or otherwise commit crime.

In 1729 (5th year of King Youngjo), the issue of alcohol consumption was first brought up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gulatory measure by King Youngjo and officers regarding the drinking practice of noble class and various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citizens as part of the policy on alcohol ban. Afterwards, in 1755 (31st year of King Youngjo), the unprecedented powerful decree for alcohol ban was declared and the patrolling and punishment against alcohol consumption was strengthened. However, those intoxicated persons did not readily go away, and rather, it provoked various social issues with the increased crime and litigations. Therefore, King Youngjo and officials perceived the alcohol as the origin of insanity and crime to draft practical control measures. In 1762 (38th year of King Youngjo), King Youngjo drafted the provision to the residents who made odd behavior from alcohol consumption in the street with the serious blow of flogging. Thereafter in 1767 (43rd year of King Youngjo), King Youngjo newly established the provisions for aggravated penal code for the repeated offender when it amended the penal code regarding the ban on alcohol consumption. Consequently, the patrolling on intoxicated persons that had gradually been strengthened during the King Youngjo's reign was promulgated under the penal code for 100 floggings for those who committed the crime of odd conduct as promulgated under 『Daejeontong-pyeon』 in 1789 (9th year of King Jeongjo).

In the meantime, as a result of analyzing 167 alcohol-related cases occurred within the capital city annually under the reigns of King Injo ~ King Gojong, 73.6% of entire culprits of alcohol crime occurred during the reigns of King Youngjo ~ King Sunjo. This period was consistent to the period of strengthening the penal provisions against the culprits of alcohol crime, which demonstrated the relativity of legal response toward the occurrence of crimes. In particular, the main culprits of alcohol crime depicted from the historic data were not the ordinary people but they were shown as Aeglye with its background of king and the authority of royal palace as well as Harye that belonged to the governing bodies, such as, Seungeong-won (Royal Secretariat), Hyeongjo (Ministry of Justice), military command and others. They mainly

drank alcohol at night, and depended on the power of the government branch that he worked for to commit various alcohol related crimes against the patrolling agents and general citizens who attempted to stop them, and even after the punishment, there was a trend that such odd conduct from alcohol did not improve and such practice was repeated.

Key words : Alcoholism(使酒 · 酗酒), Jugeum Command(酒禁令), Jugeum Punishment(酒禁刑律), Drinking(飲酒), Bbyeolgam(別監)